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서정호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4년 5월 31일
- 회부일자 : 2024년 6월 3일

3. 제안이유

- 신규 위임사무 및 위임 근거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<근거 법령개정>

- (에너지과) 전기사업자,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설비의 수리·개조·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제한명령: 전기사업법 제71조 → 전기사업법 제71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20조제1호

<부서변경>

- 투자진흥기금으로 조성한 도유재산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
- 산단관리과 → 투자유치과

<신규 위임사무>

- (축수산과) 「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무」 11건
- (교통철도과) 자동차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
 - 선정기준, 대행기간,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, 대행자의 변경

5. 검토의견

- 신규 위임사무 및 위임 근거법령 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
 - 에너지과의 업무 근거법령인 전기사업법이 전기안전관리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적확하게 지정하고,
 - 현재 산단관리과 위임사무로 되어 있는 투자유치과 위임사무를 정확한 부서로 변경하고,
 - 축수산과 위임사무에 「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관한 사무 11건을 추가하고,
 - 「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위임사무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, 근거 조례를 추가하는 것임.
-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 개정 및 관련 조례 등 근거법령을 명확하게 표기하고, 위임사무의 소관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